

# 「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 : 「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  
(관세청 고시 제2020-24호, '20. 7. 6.)

## 2. 개정 사유

- 마약류 등을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생략 기준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 필요
-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을 통해 손실보상제도 활용도를 높이고,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등을 명확하게 규정

## 3. 주요 개정내용

- 손실보상 청구 제출자료 명확화 및 청구기한 연장(제4조)
  - 청구인이 손실보상 청구 시 구비해야 할 자료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
    - \* 손실내용 및 손실가격 확인할 수 있는 자료(구매영수증 등), 신분증, 통장사본
  - 청구기한이 짧은 특송화물·우편물·여행자휴대품의 청구기한을 일반화물과 동일하도록 연장(7일 → 15일)
-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생략 기준액 확대 등 지급절차 간소화(제6조)
  - 적극적 검사환경 조성을 위해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청구서 제출 생략기준액 상향 조정(30만원 → 100만원)
  - 손실보상 관리대장에 수기(手記) 기록 대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

□ 손실보상 지급기한 명확화(제6조)

-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급 기한을 예측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 및 보상금 지급 기한 명시

\* (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)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
(보상금 지급 기한) 청구일 또는 위원회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

□ 손실보상금 지급실태 관리 강화(제12조, 제13조)

-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 따라 세관장의 자체점검 결과 보고 및 환수 관련 규정 명시

**4. 전문 및 신규 조문 대비표 : “붙임” 참조**

**5. 규제대상여부 : “해당없음”**

**6. 시행일자 : 2023. . .**

**7. 의견제출 방법**

- 제출처 :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
- 담당자 : 박용찬 사무관(042-481-7923)  
황혜진 관세행정관(042-481-7836)
- 제출기한 : 2023. . .
- 제출방법 : 이메일(liebao83@korea.kr), 팩스(042-481-7819)